

1866년의 병인양요에 대한 중국 청정부의 대응

Late Qing government's cope to the Byong'in yang'yo(丙寅洋擾) in 1866.

權赫秀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朝鮮王朝의 對西洋 鎖國政策과 淸政府의 입장
3. 淸政府의 不干涉政策과 丙寅洋擾의 勃發
4. 丙寅洋擾와 淸政府의 對應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1866년의 병인양요는 한국역사상 최초로 서양열강과 대결한 전쟁사태로서 19세기말의 한국에 대한 자본주의 열강세력의 침투와 침략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일찍부터 한국근대사 및 한불관계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왔고, 또한 1990년대 초부터 한불 두 나라 사이에 외규장각도서의 반환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한불관계사의 시각에 의한 병인양요연구가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중관계사의 시각에 의한 병인양요의 연구는 지금까지 한중 두 나라 학계를 비롯하여 거의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병인양요는 한중관계분야에 있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인 조공관계체제와 서구자본주의 세력이 "砲艦政策(Gun-Boat Policy)"의 강력한 수단으로 주장하는 근대적 조약관계체제의 최초의 충돌사태로서 19세기 말 한중관계사의 근대적 전환을 예고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당시 프랑스 측이 강경한 鎖國政策을 고집하고 있는 조선왕조 대원군 정권과 직접 교섭하지 못하고 이미 公使級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청정부를 통해 병인양요와 관련된 외교적 교섭을 전개해 온 사실로 보아 중국 청정부의 대응에 관한 고찰은 또한 병인양요연구에 있어서도 분명 하나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本稿에서는 한중관계사의 시각에서 먼저 당시 조선왕조의 對西洋 鎖國政策에 대한 중국 청정부의 입장 및 영향을 살펴보고 이어서 병인양요 당시 중국 청정부와 중국주재 프랑스 공사관 및 조선왕조 측과의 삼각교섭을

중심으로 청정부의 대응과정을 고찰함으로써 19 세기 말 한중관계사의 연구는 물론 병인양요의 연구에 一助하고저 한다.

2. 조선왕조의 對西洋 鎖國政策과 중국 청정부의 입장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략 18 세기 말엽부터 이른바 "異樣船"으로 불리우는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商船 또는 軍艦들이 한반도 해역으로 출몰하기 시작하면서 西勢東漸의 세계사적 변화의 충격은 서서히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조선에까지 미치기 시작하였다. 19 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양선의 출몰은 純祖(1800~1834) 재위 33 년에 겨우 2 회 정도에 그치던 것이 憲宗 재위 14 년(1834~1849)과 哲宗 재위 14 년(1849~1863)에는 각각 7 회 즉 2 년에 한번 정도로 증가되었다. 한편 1860 년에 중국 청정부와 체결한 『北京條約』을 통해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게 된 러시아세력도 고종원년인 1864 년부터 조선으로 직접 陸路로의 통상을 요구해오기 시작하였다. 당시 조선왕조의 대외관계는 중국과의 조공관계, 일본과의 통신사관계 및 서양각국에 대한 鎖國關係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 그중 서양각국의 통상요구에 대하여 중국과의 조공관계를 이유로 거부입장을 밝혀왔고 또한 그러한 거부사실을 중국 청정부로 통보해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굳어져왔다.

1832 년(순조 32 년) 6 월에 영국상선 앰허스트(Lord Amherst, 阿姆斯特勳爵)호가 충청도 앞 바다에 나타나 통상과 조난구조에 관한 교섭을 요청해오자, 조선정부는 곧바로 청정부 禮部로 보낸 咨文을 통해 "藩臣에게는 外交가 있을 수 없고 關市에서는 異言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거부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당시 청나라 道光황제는 조선 측의 충성스러움을 칭찬하는 의미에서 下賜하였다. 그후 1845 년(헌종 11 년) 6 월에 영국군함 사마랑(Samarang)호가 제주도 일대에서 약탈행위와 더불어 해양탐사활동을 전개한 뒤 조선정부는 역시 1832 년의 前例에 따라 청정부 예부로 咨報하면서 특히 청나라 황제가 "廣東番泊所"의 영국인들에게 諭旨를 내려 조선을 "禁斷의 땅"으로 지켜주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道光황제는 곧바로 兩廣總督 耆英에게 命하여 영국 측에게 더 이상 조선해역으로 군함을 출동시켜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게 하였다. 1847 년(헌종 13 년)에 프랑스함대가 전라도 앞 바다에 나타나 청나라와 수호조약체결사실 등을 통보하면서 조선 측과 수교교섭을 요청해 왔을 때도, 조선정부는 곧바로 청정부로 그 사실을 咨報하면서 청나라 황제가 兩廣總督에게 諭旨를 내려 프랑스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서양 열강세력의 교섭 및 통상요청에 대한 조선왕조 측의 거부입장은 줄곧 중국 청정부의 공개적 지지를 받아왔고, 그러한 지지입장은 청나라가 1842 년의 中英 『南京條約』을 비롯한 일련의 불평등조약을 통해 歐美列強과 근대적 조약관계를 맺은 뒤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여기에는 물론 중국으로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인 조공관계체제에 대한 미련과 서양열강의 포함정책에 의해 강요받은 근대적 조약관계체제에 대한 불만이 뒷받침되어 있다. 특히 異民族으로서 중원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청나라 滿洲貴族集團에게 있어서 한반도가 저들의 이른바 "龍興之地"인 滿洲지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조선왕조의 對西洋鎖國政策을 지지해주는 것은 결국 당시 중국 청정부의 현실적 안보 및 외교적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 청정부의 위와 같은 지지입장은 당시 조선왕조의 對西洋鎖國政策을 뒷받침해주는 유일한 국제적 지지요소 또는 영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왕조의 경우 당시 "事大"로 일컬어지는 중국과의 조공관계는 단순히 서양열강세력의 교섭요구를 물리치는 외교적 구실의 차원을 넘어서 나름대로 구미 자본주의 세력의 침투 자체를 막아주는 제도적(국제관계) 메커니즘의 역할을 해왔고, 그러한 상황은 高宗시대 초기의 대원군 집권 시절에 들어서도 별다른 변함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조선해역에서 조난 당한 서양인들을 청나라로 송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벌써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865년(고종 2년) 10월에 대원군 정권은 江原道 三陟에 漂到한 異樣人을 "問情"한 뒤 1860년(철종 11년, 庚申年)에 琉球人을 청나라로 보냈던 前例에 따라 역시 청나라 鳳凰城으로 送致하였고, 이에 청정부도 과거의 前例에 따라 조선에서 送致해온 "難夷"들을 받아주고 또한 救護해 주었다. 병인양요가 발생하기 직전인 1866년 7월초에도 대원군 정권은 평안도 鐵山府 앞 바다에서 조난 당한 미국상선 서프라이스(Surprise)호에 탑승했던 서양인 6명과 중국인 1명을 역시 청나라로 송치하였다.

이처럼 성리학 중심의 유교문명을 바탕으로 한 전근대적 통치이념과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로 전통적 조공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 청정부와 조선왕조에게 있어서 기독교문명과 근대적 이념 및 질서를 주장하는 서양열강세력의 조선진출을 한결같이 반대하는 것은 결국 상호간의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안보적 이익의 일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9세기 후반 西勢東漸의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조선왕조의 전근대적 사회체제와 지배구조를 존속시키고 나아가서 한중 두 나라의 조공관계를 수호하는 것은 세계사적인 근대적 전환의 大勢를 거부하고 있는 조선왕조 대원군정부 및 중국 청정부의 보수적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바로 그러한 조공관계가 포함정책의 강력한 수단을 이용하여 근대적 조약관계를 주장해오는 서양열강의 공식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865년 10월말에 청나라 주재 영국대리공사 웨이드(Wade, Sir Thomas, 威妥瑪)는 청정부 총리아문으로 보낸 照會에서 영국군함의 중국 북방지역해안 및 조선해안 탐사계획을 통보하면서, 특히 "安南"의 실례를 들어 조선을 비롯한 "泰西以東各國"에서 "海禁"을 이유로 군사력이 막강한 "泰西各國"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나라의 멸망 또는

분할점령과 같은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그는 청정부에서 조선 측으로 이번 탐사행동에 나선 영국군함의 식품구매요청 등을 거부하지 말도록 권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정부는 청나라 연해지역의 지방관들에게 영국 측의 중국 북방연해지역 탐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지만, 영국 측의 요청대로 조선정부로 위와 같은 영국군함의 조선해역 탐사계획을 통보해주지는 않았다. 이처럼 조선과의 조공관계를 계속 고집하면서도 강대한 군사적 실력으로 조선진출을 시도하는 서양열강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중국 청정부의 對朝鮮關係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困境이었다. 이미 두 차례의 阿片戰爭에서 연이어 패전을 당한 청정부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정책은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감하였고, 따라서 서양열강의 확장과 침략의 觸手が 조선을 포함한 청나라 주변국가에까지 직접 미쳐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이미 근대적 조약관계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주변국가 사이의 전통적 관계분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즉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인 조공관계는 이미 그 체제의 중심으로 되어 있던 중국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서양의 충격(Western Impact, 西方衝擊)"에 맞설 수 있는 자아방어의 능력을 차츰 잃어버리기 시작하였고,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조공관계 역시 더 이상 서양세력의 조선진출을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조공관계의 체제 속에서 중국의 커다란 그림자 뒤에 "은둔"해 있던 조선은 부득불 서양열강의 침략위협 앞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병인양요가 발발하였다.

3. 청정부의 불간섭정책과 병인양요의 勃發

필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까지 중국 청정부는 1866년 초부터 시작된 조선왕조 대원군 정권의 천주교세력에 대한 병인박해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청정부는 앞서 조선왕조의 對西洋 鎖國政策을 지지해오던 입장에 따라 프랑스 측의 조선선교계획에 관한 협조요청을 그대로 거절하였다. 바로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한해 전인 1865년에 중국주재 프랑스 공사 벨데미(Berthemy, Jules Francois Gustave, 栢爾德密, 伯爾得米)는 청정부에서 프랑스의 선교권을 인정한 1858년 『中法天津條約』 제 13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선선교에 나설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아울러 그 사실을 조선 측으로 통보해주기를 요청하였지만, 청정부 총리아문에서는 이를 거절하였다.

당시 총리아문의 답변인즉 "조선은 물론 (청나라의) 屬國이지만 오로지 正朔을 받들고 해마다 때에 따라 朝貢을 할뿐 그 나라에서 奉教를 원하고 있는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강요할 수 없고 또한 『中法天津條約』을 조선에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프랑스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였다. 이처럼 조선과 명분상의 조공관계만 고집하면서도 조선과 서양열강 사이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수적 그리고 이기적 입장은 결국 조선문제로 인한 서양열강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두려워하는 청정부의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내었고, 나아가서 근대적 조약관계의 원칙과 관례를 주장하고 있는 서양열강세력이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조공관계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해 가면서 저들의 조선침략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었다.

실제로 이듬해인 1866년 7월초에 대원군 정권의 병인박해사실을 전달받은 프랑스 대리공사 벨로네(Bellonet, Claude Henri Marie, 伯洛內, 白龍納)는 7월 13일자 조회를 통해 청정부 총리아문으로 조선에 대한 프랑스 측의 군사적 보복계획을 통보하면서 한중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 小王國은 일찍이 屬國으로 中國帝國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이 야만적 행위로 인해 영원히 중국제국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중국정부는 조선에 대해 권한도 권리도 없음을 본인에게 수차 선언하였고 이러한 구실 하에 이 나라에 天津條約을 적용하고, 우리 선교사에게 우리가 요청한 여권을 발부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기록하여 두었고, 이제, 조선왕국에 대한 중국정부의 아무런 권위도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즉 벨로네는 조선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청정부의 거듭된 태도표명을 이유로 조선에 대한 청정부의 권위와 영향력 즉 조공관계를 공식적으로 부정하였는데, 그 목적은 물론 프랑스 측의 조선원정에 대한 청정부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외교적 전략이였다. 이에 총리아문에서는 7월 16일자 회답조회를 통해 韓佛 두 나라의 전쟁사태를 막고 서로 인명의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화해권고를 하면서 프랑스 측이 군사보복에 앞서 먼저 사실확인과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

당시 총리아문에서 한중 두 나라의 조공관계를 부정하는 벨로네의 상기 조회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조선이 중국을 종주국으로 승인해주기만 한다면 제 3국의 인정여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조공관계의 전통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다음날인 7월 17일에 총리아문에서는 1865년에 프랑스 공사 벨데미의 요청을 거절하였던 이유를 다시 언급하면서 영국함대의 조선해역 탐사계획을 조선 측으로 미리 통보해달라는 영국 공사 알콕(Alcock, Sir Rutherford, 阿禮國)의 요청을 공식 거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아문에서는 7월 18일자 同治황제에게 올린 상주문을 통해 프랑스 측의 조선침략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첫째, 일찍 지난 해(1865년)부터 프랑스 선교사의 조선선교계획을 통보하면서 조선정부로 연락해주도록 요청해 온 것으로 보아 프랑스는 분명 오래 전부터

조선에 선교하려는 뜻을 품어 왔고, 이번에 저들 선교사의 피살을 이유로 조선에 대한 군사보복계획을 공식 통보해온 이상 결코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둘째, 조선과의 조공관계를 감안할 때 프랑스 측의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으므로 현재 프랑스 측을 설득할 수도 없고 제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프랑스 측에 화해를 권고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들의 교만한 자세를 나름대로 제압해보려고 한다.

여기서 프랑스 측의 조선침략 움직임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제지하기도 어렵다(勸禁兩窮)"는 표현은 바로 당시 청정부의 난처한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즉 청정부의 안보적 그리고 외교적 이익상 청나라와 조공관계를 갖고 있는 조선에 대한 침략위협을 관심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보복전쟁을 공언하는 프랑스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군사적 실력은 물론 그러한 의지조차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프랑스공사에게 보내는 위와 같은 회답조회를 통해 화해권고의 노력을 시도해볼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공사관으로 위와 같은 회답조회를 보내는 한편 총리아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응조치를 강구하였다. 첫째로 총리아문에서 天津주재 欽差三口通商大臣 崇厚와 上海주재 兩江總督 吳棠을 비롯한 연해지역과 동북지역의 군사 및 행정장관들에게 프랑스의 조선침략계획을 비밀리에 통보하면서 한반도와 마주한 중국연해지역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총리아문에서는 특히 위와 같은 통보내용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그 것은 바로 위와 같은 통보내용이 청나라 연해지역의 안전을 위한 군사적 대비조치에 불과할 뿐 결코 프랑스의 조선침략계획을 실력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대내외적으로 각별한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 8 월초에 山東巡撫 閻敬銘은 총리아문으로 조선에서 탈출한 리델(Ridel, Felix Clau, 李福明) 신부일행이 탑승한 소형선박이 같은 해 7 월 6 일 오후에 煙臺港으로 입항하였고 리델 신부는 그 다음날로 南柳 기선 편에 天津으로 출발하였다는 요지의 정보를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정보는 이미 연대주재 프랑스 영사를 통해 확인한 믿음직한 내용이었고 특히 조선으로부터 탈출한 리델 신부 일행이 이미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과 접촉을 가졌다는 사실은 프랑스함대의 조선침략행동이 곧바로 개시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중요한 정보였다. 그러나 청정부에서는 결국 위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조선정부로 통보해주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당시 한중 두 나라사이의 연락채널의 미비 등 기술적 문제보다도 역시 프랑스와 조선의 전쟁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는 청정부의 소극적 불간섭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총리아문에서 취한 두 번째 조치는 바로 7 월 24 일자로 조선과의 조공관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禮部로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 주었는데, 그

목적은 물론 예부의 채널을 통해 조선정부로 프랑스의 군사보복계획을 통보해주기 위해서였다. 이에 청정부 예부는 곧바로 수 백년 동안 유지되어온 한중 두 나라의 조공관계를 감안하여 프랑스의 군사보복계획을 조선으로 통보해주어 나름대로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상주문을 올려 같은 해 8월 1일자로 同治皇帝의 裁可를 받아내고, 곧이어 조선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급히 咨報해주면서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요구하였다. 조선왕조 측에서 청정부 예부의 위 咨文을 받은 것은 프랑스 함대가 제 1차 침략을 감행하기 한달 전인 8월 16일이었는데, 대원군 정권은 곧바로 감사의 뜻을 밝히는 한편 병인박해의 진상을 설명하는 입장에서 회답 咨文을 작성하여 청정부로 보내주었다.

같은 해 8월 20일자로 작성된 이 회답자문에서 대원군 정권은 프랑스 신부들이 조선으로 불법 입국한 뒤 "凶徒匪類"를 집결시켜 不軌를 도모하였기에 국법에 의해 처단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프랑스측의 군사보복계획을 비난하였고, 아울러 "藩臣에게는 외교가 있을 수 없다(藩臣無外交)"는 전통적 조공관계의 원칙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서양열강에 대한 鎖國政策의 의지를 再闡明하였다. 한편 대원군 정권은 청정부 측의 위와 같은 咨報에 근거하여 분명 조선국내에 아직도 천주교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검거행동을 실시함으로써 "한때 뜸하여졌던 천주교의 박해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대원군 정권은 연해지역을 비롯한 전국적 범위 내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적극 강화하였는데, 같은 해 9월초에 평양으로 진입한 미국상선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 舍門將軍)호를 소각한 사건도 당시 크게 강화된 군사적 대비태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원군 정권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 직후인 9월 30일자로 청정부에게 자문을 보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통보하였는데, 특히 1832년(淸 道光 12년, 조선 純祖 32년)이래 서양열강의 통상 및 교섭요청을 거절하여 청정부의 지지를 받아온 사례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은 對西洋 鎖國政策은 사실상 한중 두 나라의 전통적 조공관계의 이익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청정부 예부에서는 병인양요가 이미 일어난 뒤인 9월말에 賚咨官 吳慶錫 편에 전달된 대원군 정권의 상기 8월 20일자 회답자문을 접수한 뒤 곧바로 동치황제에게 그 내용을 상주하였다. 이어서 軍機處를 거쳐 예부의 상주문 내용을 전달받은 총리아문에서는 9월 29일자 상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즉 이미 7월 16일자 회답조회를 통해 화해권고를 하였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벨로네 측으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과연 프랑스 측이 조선침략계획을 포기하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해군함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일단 예부를 통해 조선정부에게 미리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통보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총리아문에서 최초로 병인양요사태에 관한 정보보고를 받은 것이 10월 11일경이었으므로 9월 29일 현재까지 프랑스 측의 조선침략계획 포기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총리아문의 언급은 사실이라고 생각되며, 그만큼 전통적 조공관계의 상황에서 청정부가 조선에서 일어난 상황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하튼 이틀 뒤인 10월 1일자로 동치황제의 裁可를 받은 총리아문에서는 곧바로 그 내용을 예부로 통보해주었고, 예부에서도 그 다음날인 10월 2일자로 총리아문의 상기 상주문 내용을 통보해주는 자문을 작성하여 다시 한번 조선으로 "飛咨"해주었다. 그러나 이 咨文은 병인양요가 일어난 뒤인 10월 18일에야 조선으로 전달되었으므로 사실상 조선정부에게 미리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사전통보 해주려던 본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대한 총리아문의 화해권고 노력 역시 곧바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앞서 조선에 대한 청정부의 아무런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벨로네 공사는 더 이상 총리아문의 회답조회에서 밝힌 화해권고의사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병인양요를 일으킬 때까지 총리아문으로 아무런 조회도 보내지 않았다. 그후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인 로즈(Roze, Pierre Gustave, 羅茲)해군소장의 지적에 따라 벨로네의 상기 조회 내용은 같은 해 11월에 프랑스 외무성에 의해 무효화되었지만,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조공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은 로즈제독 및 프랑스 정부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었다. 로즈해군소장은 병인양요를 일으키기 직전인 1866년 9월 7일자로 해군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恭親王의 선언 등을 이유로 "중국과 조선사이에 이미 宗主關係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였고, 프랑스 외무성 역시 같은 해 11월 10일자로 벨로네에게 보낸 훈령에서 "조선이 中國帝國의 屬國인가 아닌가는 지금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명백히 지시하였다.

결국 청정부는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2개월 전에 이미 벨로네 대리공사의 조회를 통해 프랑스 측의 조선침략계획을 통보 받았지만 소극적 불간섭정책을 고집한 나머지 프랑스 측의 조선침략계획을 끝내 제지하지 못하였고, 프랑스 측에서는 조선의 내정외교문제에 대한 불간섭입장에 관한 청정부의 거듭된 성명을 이유로 한중 두 나라의 전통적 조공관계자체를 공개적으로 부정한 뒤 총리아문의 화해권고를 그대로 묵살하였고 나아가서 저들의 조선침략행동에 대한 청정부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다. 그리고 청정부는 프랑스 함대의 조선침략행동이 청나라 연해지역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여 自國 연해지역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였고, 또한 선후로 두 차례의 자문을 통해 조선정부에게 나름대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통보해주었는데 그중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한달 전에 전달된 제 1차 자문은 대원군정권의 군사대비태세 강화 및 새로운 천주교탄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조선과의 전통적 조공관계를 고집하면서도 조선과 프랑스의 군사적 충돌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및 개입행동을 회피하려는 청정부의 소극적인

불간섭정책은 프랑스 측이 거리낌없이 병인양요를 일으킬 수 있었던 하나의 객관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4. 병인양요 및 청정부의 대응

조선에서 일어난 병인양요에 대한 청정부의 대응은 크게 프랑스 측의 조선침략행동에 대한 대응과 조선정부와의 상호연락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순서 상 먼저 프랑스측의 조선침략행동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청정부가 최초로 병인양요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은 병인양요의 제 1 차 단계가 이미 끝난 1866년 10월 11일에 三口通商大臣 崇厚를 통해 전달된 東海關道 潘滉의 정탐보고에 의해서였다. 烟臺지역에서의 정탐결과 및 煙臺주재 영국영사와의 면담 등 루트로 수집된 위 정보에 의하면 당시 영국과 미국도 자국국민의 피살사실을 이유로 군함을 파견하여 프랑스 함대와 함께 조선을 공격하려고 있으며 약소한 조선의 군사실력으로는 아무래도 맞설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영국과 미국에 관한 내용은 물론 앞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관련된 訛傳이었다.

곧이어 총리아문에서는 벨로네 대리공사의 10월 21일자 조회를 통해 프랑스 함대에 의한 조선 서해안 및 漢江의 봉쇄소식을 통보 받았는데, 그것은 이미 병인양요의 제 2 차 단계에 관한 군사적 조치에 해당하였다. 당시 로즈사령관은 실제 봉쇄시일보다 10일이나 앞당겨 기록한 문서로 위와 같은 漢江봉쇄령을 중국 및 일본주재 각국 공사를 통해 열강정부로 전달하였는데, 그 이유인즉 한강봉쇄를 사실화하여 청정부를 비롯한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외교적 전략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조선에서 전개되고 있는 병인양요의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총리아문에서는 거의 반달이 지난 11월 4일에야 恭親王 명의의 회답조회를 통해 앞서 7월 16일자 회답조회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프랑스 측의 전쟁행위 자제 및 진상조사를 요청해 나섰다.

이에 벨로네는 곧바로 11월 11일자 회답조회를 통해 조선정부의 천주교 박해에 대한 "중국정부 측의 공범에 아주 진지한 의심"을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벨로네의 위와 같은 지적에 당황해난 총리아문에서는 11월 16일자 조회를 통해 벨로네의 지적사실을 일일이 해명하는 한편 11월 23일에는 벨로네 및 북경 주재 각국 공사에게도 조회를 보내 프랑스 공사관과의 왕복조회 내용을 통보하면서 "공평한 평가"를 요청함으로써 은근히 열강의 간섭을 기대하였다. 당시 청정부가 벨로네의 위와 같은 지적에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로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부터 조선과 프랑스 사이의 충돌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극구 회피하려는 불간섭정책의 일환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총리아문에서는 프랑스 측이 청정부의 거둬들인 군사보복행동 자제요청과 화해권고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른바 "以夷制夷"적 수법으로 열강세력을 끌어들이어 프랑스의 조선침략행동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였는데, 청정부의 對朝鮮政策 분야에서 위와 같은 "以夷制夷"적 수법은 그후에도 종종 나타났다.

그러나 벨로네는 총리아문의 위와 같은 행동이 국제적 관례를 위반하는 것이고 그 어떤 나라도 프랑스와 조선 사이의 전쟁사태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역시 중국주재 각국 외교대표들에게 청정부 측과 왕복조회 문서를 통보해주는 등 외교적으로 맞불 작전에 나섰다. 그러던 중 로즈사령관이 이끄는 프랑스함대가 11월 18일자로 한강봉쇄의 해제를 선언하고 21일까지 조선에서 철수함으로써 병인양요사태가 종료되자 청정부와 북경주재 프랑스 공사관 사이의 외교전 역시 龍頭蛇尾로 끝나고 말았다.

이처럼 두 단계에 걸쳐 두 달 남짓이 전개된 병인양요 기간에 청정부는 단 한 건의 불확실한 정보만 입수한 채 병인양요의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프랑스의 조선침략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병인양요의 제 2 단계에서는 조선정부에 병인박해사태에 대한 청나라의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프랑스 공사관과 외교적 논쟁을 벌이다가 병인양요의 종결을 맞이하고 말았다.

한편 병인양요가 전개되는 기간에도 한중 두 나라 사이에는 전통적 조공관계에 의한 使臣의 왕래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1866년 한 해 동안 한중 두 나라의 사신왕래사실에 관해서는 다음 표 1을 참조할 수 있다. 즉 1866년 한해 동안 조선왕조에서는 歲幣行 또는 年貢行으로 불리는 冬至使의 파견외에도 王妃책봉을 위한 奏請使를 파견하였고 청나라에서도 왕비책봉을 위한 勅使를 조선으로 파견하였다.

왕 래 시 간	使 臣 名 稱	왕 래 내 용	사 료 출 처
1866. 2. 12.	冬至正使李興敏, 副使李鍾淳 일행	北京의 紫禁城 午門 밖에서 同治皇帝를 "瞻觀"	『淸穆宗實錄』 同治 4 年 12 月 戊 午
1866. 8. 9.	王妃冊封奏請正使 柳厚祚, 副使徐堂輔 일행	北京의 紫禁城 午門 밖에서 同治皇帝를 "瞻觀"	同上書 同治 5 年 6 月 丙 辰
1866. 11. 1.	朝鮮國王王妃冊封正使 魁齡, 副使希元	서울 景福宮 仁政殿서 王妃冊封儀式 거행하고, 고종을 만남.	『承政院日記』, 『高宗實錄』 高宗 3 年 9 月 24 日
	冬至正使李豊翼, 副使李世器 일행	서울서 고종에게 "辭陛"	同上書

1866. 11. 30.			고종 3년 10월 24일
------------------	--	--	---------------

表一: 1866年 韓中兩國間 使臣往來 一覽表

그 중에서도 청나라의 朝鮮國王妃冊封使 理藩院右侍郎 魁齡과 委散秩大臣 希元 일행은 프랑스 함대가 본격적인 조선침략행동을 감행하는 병인양요의 제 2 단계 기간에 서울에 도착하여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정도 체류하면서 朝鮮國왕비 즉 閔妃에 대한 책봉의식을 거행하고 고종과 두 차례 회견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가장 위급한 사안이었던 병인양요문제를 논의한 기록은 한중 두 나라의 문헌에서 모두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조공관계는 "서양의 충격"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상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병인양요는 중국중심의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인 조공관계체제의 몰락을 예고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조공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신왕래가 대체로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를 의미한다면 咨文의 왕래는 보다 구체적인 사무를 논의하는 일종의 공식연락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병인양요를 전후하여 1866년 8월부터 1867년 3월까지 반년 남짓한 기간에 한중 두 나라는 무려 13건의 자문을 주고받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2를 참조할 수 있다. 이처럼 빈번한 咨文의 왕래는 물론 프랑스 함대의 조선침략으로 나타난 "서양의 충격"에 대한 한중 양국간 전통적 조공관계의 구체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려 13건에 달하는 咨文을 살펴보면 프랑스 함대의 조선침략을 공동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나 협상이 전혀 없었던 반면 주로 전통적 조공관계의 권위와 관련된 사안 및 마침 병인양요기간에 일어난 제너럴 셔먼호사건의 문의 등 내용에 불과하였다.

표 2에서 列擧한 총 13건의 왕복자문 가운데서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 청정부가 조선으로 보낸 자문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 중 벨로네의 7월 13일자 照會내용을 통보하면서 조선 측의 대비를 촉구하던 禮部의 8월 초 飛咨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원군 정권의 군사대비태세 강화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함대의 조선침략 가능성을 경고하는

번호	대원군정권	청정부禮部	작성/발송시일	咨文 내용	비
1		咨文	1866년 8월초 작성 및 발송	프랑스 宣戰내용통보, 조선측의 신중대처 요청	飛

2	8 월초 禮部飛咨의 회답		1866 년 8 월 20 일 작성	천주교탄압사실통보, 및 쇄국입장 밝힘.	9
3	咨文		1866 년 9 월 30 일 작성	제너럴 셔먼호 사건 통보, 쇄국입장 밝힘.	11
4		8 월 20 일자回咨再回答	1866 년 10 월 2 일 작성	프랑스함대의 침략가능성에 대비 요청	飛
5	"洋檄緣由" 咨報		1866 년 10 월 23 일경 작성	프랑스측"回檄" 내용 중"侵逼上國"사실咨報	12
6		9 월 30 일來咨의 회답	1866 년 11 월 17 일 작성	9 월 30 일자來咨 접수 및 轉奏사실 통보	飛
7		9 월 30 일來咨 再回答	1866 년 11 월하순 작성 및 발송	제너럴셔먼호사건의 신중대처 요구	韓
8	병인양요 경과咨報		1866 년 11 월 30 일 작성 및 발송	병인양요경과咨報 및"排解法國塘兵"감사 등	18
9		李興敏私函관련咨文	1866 년 11 월말경 작성 및 발송	李興敏이 萬靑黎에게 보낸私函件 처리결과 통보	18 서
10	11 월하순 回咨 회답		1866 년 12 월 11 일 작성	제너럴셔먼호사건 해명, 쇄국의지 再闡明	18
11		10 월 23 일朝鮮來咨회답	1866 년 12 월 24 일 작성	프랑스"回檄"관련來咨 上奏사실 통보	서
12		12 월 11 일 回咨에회답	1867 년 2 월 16 일 작성	제너럴셔먼호사건 해명咨文 轉奏사실 통보	서
13		咨文	1867 년 3 월 9 일 작성	『中法天津條約』第 31 條 내용 통보	18

청정부 禮部の 10 월 2 일자咨文은 역시 飛咨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인양요가
일어난 뒤인 10 월 18 일에 서울로 전달됨으로써 조선정부로 사전통보
해주려던 본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表二: 丙寅洋擾前後 韓中兩國間 咨文往來 一覽表

따라서 상기 청정부 禮部의 10월 2일자 飛咨에 대한 조선 측의 10월 23일자 回咨에는 앞서 8월 20일자 回咨내용과 대조적으로 별다른 감사의 뜻을 밝히는 내용이 없이 극히 사무적인 간단한 문구뿐이었다.

즉 청정부는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인 8월초부터 10월 초 까지 두 번이나 조선으로 飛咨라는 긴급전달수단을 통해 프랑스함대의 조선침략 가능성을 통보해주었고 그중 8월 초 飛咨는 대원군 정권의 군사대비태세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물론 두 번째의 10월 2일자 飛咨는 사실상 사전경고와 통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만, 여하튼 두 달 동안에 연속 두 번의 飛咨라는 긴급연락수단을 통해 프랑스함대의 침략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나름대로 대비하도록 통보하는 것은 바로 당시 청정부가 프랑스측의 조선침략행동에 대한 불간섭정책을 고집하면서도 조선에 대한 전통적 조공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모순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상기 10월 2일자 飛咨를 받은 지 이틀 뒤인 10월 20일에 대원군 정권은 프랑스함대의 로즈사령관이 조선 측의 항의 檄文에 회답하는 문서("洋檄") 내용 중 프랑스가 청나라를 항복시킨 사실을 언급한 대목이 청정부의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하여 그 내용을 특별히 청정부 禮部로 咨報하였다. 이처럼 한창 프랑스의 무장침략을 받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원군 정권이 당시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유일한 공식연락채널인 자문을 통해 조선의 영토안전 및 주권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조공관계체제와 관련된 청정부의 명분 및 권위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열흘 뒤인 11월 1일 즉 병인양요 기간에 서울로 도착한 청정부 冊封勅使 일행이 조선 측과 병인양요문제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조공관계가 이미 西勢東漸의 세계사적 변화의 현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정부 禮部에서는 병인양요사태가 이미 종료된 같은 해 12월 12일에야 盛京禮部를 거쳐 대원군 정권의 상기 10월 20일자 咨報를 받아 보았는데, 그 내용을 의례 同治황제에게 轉奏하면서 조선 측에서 가장 우려하던 이른바 "上國侵逼"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총리아문에서 "(청나라)朝廷의 懷遠의 뜻을 보여주고 또한 藩邦의 嚮化의 정성을 굳게 하도록" 잘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禮部의 위와 같은 주장은 12월 15일자로 同治황제의 재가를 얻어내었고 따라서 禮部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곧바로 12월 24일자 回咨를 통해 조선으로 통보해주었다. 대원군 정권에서 프랑스 측의 "洋檄"내용을 크게 문제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청정부의 위와 같은 무관심한 태도는 역시 병인양요 당시의 불간섭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대원군 정권은 병인양요기간 중 9월 30일자 자문을 통해 平壤에서 일어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청정부 예부로 통보해주면서 조선의 현실사정 및 성리학 중심의 유교적 "學術"이념상 서양열강의 통상요청과 "異教"의 전파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위 咨文은 領時憲書賚咨官 韓文奎에 의해 같은 해 11월 6일에 북경의 예부로 전달되었는데, 이에 예부에서는 일단 위 자문의 내용을 의례 同治황제에게 轉奏하였다는 요지의 간단한 回咨를 먼저 11월 17일 자로 조선에 飛咨해 주었다. 이처럼 의례적인 간단한 내용의 回咨를 飛咨의 긴급연락수단으로 전달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 청정부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실제로 10월 11일 경 총리아문에서는 이미 三口通商大臣 崇厚의 보고를 통해 프랑스의 목조선 한 척이 조선 측에 의해 격침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국인과 미국인의 피해도 있어 영국과 미국 측이 프랑스와 연합하여 조선에 대한 공동원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곧이어 북경주재 미국공사대리 윌리엄스(Williams, Samuel Wells, 衛廉士, 衛三畏)로부터 미국상선 한 척이 조선에서 소각되고 선장 및 선원들이 모두 피살되었다는 내용의 조회를 받은 적도 있다. 따라서 대원군 정권의 9월 30일자 자문을 통해 확인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병인양요 당시 청정부가 조선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면서 고집해온 불간섭정책을 근본적으로 동요할 수 있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정부에게 커다란 불안을 새롭게 안겨준 셈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同治황제에게 올린 총리아문의 11월 12일자 상주문은 청정부의 위와 같은 불안한 입장을 잘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첫째, 프랑스의 조선침략행동이 이미 시작된 이상 청정부의 화해권고는 더 이상 실질적인 효력이 없을 것이며 나아가서 조선 측에서 화해하려고 하더라도 프랑스 측은 과거에 요구하던 宣敎權 외에 조선원정과 관련된 전쟁비용의 배상도 함께 요구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재 영국과 미국도 프랑스와 연합하여 조선에 대한 공동작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프랑스가 가장 위협적이고 그 다음이 영국으로 보인다. 셋째, 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을 시작한 이상 프랑스는 물론 영국과 미국도 장차 분명 조선에 대한 通商, 宣敎 및 군비배상의 요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랑스와 영국 측에서 청정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리가 없고 그렇다고 청정부가 조선정부에 열강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총리아문에서는 禮部의 채널을 통해 청정부와 북경주재 佛美 두 나라 공사관 사이의 왕복조회내용을 전달해주면서 조선정부에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통보해주자고 건의하였고, 곧바로 동치황제의 재가를 거쳐 11월 하순 경 귀국하는 韓文奎 편에 위와 같은 내용의 回咨를 조선으로 다시 전달해주었다. 이처럼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정부에서 한번의 飛咨를 포함한 연속 두 번의 回咨를 보내 조선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조선의 안전을 걱정하기에 앞서 조선과 서양열강 사이의 군사적 충돌사태가 건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청정부까지 끌어들이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훗날 미국공사 버링게임(Burlingame, Anson, 蒲安臣, 蒲麟痕, 蒲玲璣)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청정부의 책임을 추궁해 왔을 때 총리아문에서는 조선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권 행사를 거부하면서 한중 두 나라의 조공관계는 의례적(ceremony)인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처럼 병인양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대응과정에서도 청정부는 여전히 불간섭정책을 고집해왔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관련하여 대원군 정권은 또한 李興敏私函이라는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청정부에게 사태의 진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李興敏은 1865년(乙丑, 淸 同治 4年, 조선 高宗 2年)에 冬至正使 자격으로 청나라를 방문하면서 禮部尙書 萬靑黎와 의례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후 병인양요가 방금 시작된 1866년 9월 21일에 萬靑黎 앞으로 개인명의의 私函을 작성하여 같은 해 11월 6일경 領時憲書賚咨官 韓文奎 편에 북경의 萬靑黎 님으로 직접 전달해주었다. 여기서 이흥민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서양열강의 통상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 서양에서 들어온 이른바 "洋貨"를 "一切禁斷"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였고, 특히 제너럴 셔먼호 측에서 "上國公文"운운해가면서 청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공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은근히 서양열강의 조선진출시도에 대한 청정부의 태도와 관련한 조선 측의 우려와 의구심을 전달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원군 정권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청정부로 공식 통보하는 咨文이 李興敏의 상기 私函보다 거의 열흘 늦은 9월 30일자로 작성되었고 또한 거의 일년 전에 단 한번 의례적인 만남 밖에 없었던 李興敏이 갑작스럽게 萬靑黎의 집으로 직접 私函을 보내면서 그 내용 중 異例的으로 고종과 대원군에 대한 칭송을 가득 늘어놓는 등 흔적으로 보아, 위 私函은 분명 대원군 정권에서 李興敏私函이라는 사적인 채널을 통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및 방금 시작된 병인양요사태에 대한 청정부의 진실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추정된다. 이에 萬靑黎도 同治황제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상주하면서 조선정부에서 이번의 "洋船擄兵"사태와 관련하여 咨文과 같은 공식 문서를 통해 충분히 언급할 수 없었던 내용을 私函의 형식으로 전달한 것이며 자신의 회답서신 역시 분명 조선국왕에게 보여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萬靑黎는 同治황제의 裁可를 거쳐 청정부에서 "公文"형식으로 "洋船"의 조선진출을 허락해주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洋船"의 출몰이 과연 中止될 수는 없으므로 조선정부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回信을 작성하여 귀국하는 韓文奎 편에 발송하였다. 萬靑黎의 위와 같은 回信내용이 총리아문 측과 사전협상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여하튼 원칙적으로 조선정부의 鎖國政策을 지지하면서도 제너럴 셔먼호 사건 및 병인양요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는 불간섭정책의 기조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였다. 그리고 萬靑黎의 回信은 앞서 李興敏의 私函처럼 개인적 차원에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예부의 回咨라는 공식 절차로 발송하였는데, 그 것은 바로 병인양요의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른바 "人臣無外交"라는 전통적 조공관계의 원칙과 관례를 고집하고 있는 청정부 측의 보수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같은 해 12월 16일에 萬靑黎의 회신을 포함한 상기 禮部 回咨를 전달받은 대원군 정권은 곧바로 李興敏을 譴罷하는 한편 冬至使行 편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咨文을 발송해주었는데, 그 것은 사실 청정부의 위와 같은 보수적 조처에 대한 마지못한 호응자세로 생각된다. 이처럼 병인양요기간에 조공관계의 관례를 벗어나 청정부의 관계당국자와 보다 효과적인 연락채널을 확보하려던 대원군 정권의 시도는 전통적 조공관계의 원칙을 고집하는 청정부 측의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좌절되었는데, 훗날 고종정권이 李裕元을 통해 李鴻章과 개인적 서신연락채널을 확보한 것도 사실상 위와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해 11월 18일에 프랑스 함대의 철수로 병인양요사태가 종료되자 대원군 정권은 11월 30일자로 병인양요의 자세한 경과를 통보하는 咨文 및 청정부의 화해권고노력에 대한 감사의 表文을 작성하여 謝恩冬至使 李豐翼 일행 편에 발송하였다. 그리고 앞서 제너럴 셔먼호사건을 거둬 묻는 청정부 禮部의 두 차례 咨文에 대한 회답으로 12월 11일자 回咨를 작성하여 冬至使行의 所到處로 下送해주었는데, 여기서 대원군 정권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자세히 해명하면서 특히 프랑스가 요구하는 通商, 傳教, 賠償 따위는 비록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곤욕을 당하더라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鎖國의지를 밝혔다. 위와 같은 문서는 앞서 살펴본 李興敏 譴罷관련 回咨 및 『中法天津條約』 제 31 조의 내용을 문의하는 別單과 더불어 다음해인 1867년 2월 초에야 李豐翼 일행에 의해 북경으로 전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정부 총리아문에서는 1867년 2월 27일자 상주문을 통해 병인양요 사태가 종료된 뒤 청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 측의 향후 움직임. 현재 프랑스 함대가 조선으로부터 철수하였지만 그대로 조선 침략행동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침략행동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지는 아직 속단할 수 상황이다.

둘째, 조선 측의 입장. 조선정부가 이미 "民情國勢"상 "通商傳教"의 요구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밝혀온 이상 중국도 조선정부를 강요할 수 없으며, 다만 禮部의 回咨를 통해 스스로 잘 대처하도록 통보해줄 수밖에 없다.

셋째, 『中法天津條約』과 조선의 관계. 조선 측이 문의해온 『中法天津條約』 제 31 조에는 중국 또는 프랑스가 제 3국과 교전시 상대국 선박의 통행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조선 측으로 통보해주면서

중국이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열강과 체결한 모든 조약의 내용은 "오로지 중국 본토를 가리키되 外藩에 미치는 것이 아니며 조선과 관련된 것은 추호도 없다"는 뜻을 함께 전달해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서양열강의 조선진출문제에 대한 불간섭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총리아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곧바로 同治황제의 裁可를 받은 뒤 禮部의 回咨를 통해 조선으로 전달되었다. 청정부의 위와 같은 不干涉政策은 그후 1871년의 辛未洋擾 때도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훗날로 기약하겠다.

5. 맺는 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66년의 병인양요가 한국역사상 최초로 서양열강과 대결한 전쟁사태로서 그후 한국에 대한 자본주의 열강세력의 침투와 침략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오래 동안 전통적 조공관계를 유지해온 한중관계사에 있어서도 분명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중국과의 조공관계는 조선왕조가 對西洋 鎖國政策을 고집하면서 서양열강의 통상교섭요구를 거부하는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하였고, 중국 청정부 역시 아편전쟁이후 서양열강과 근대적 조약관계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의 위와 같은 對西洋 鎖國政策을 변함없이 지지해주었다. 그러나 서양열강세력이 "포함정책"의 강력한 수단을 통해 근대적 통상 및 조약관계를 요구해오고 또한 동아시아 조공관계체제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 조공관계는 더 이상 서양열강의 조선침략을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중국의 커다란 그림자 뒤에 "은둔"해 있던 조선은 결국 서양열강세력의 침략위협 앞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1866년 당시 조선왕조 대원군 정권의 천주교 박해사실을 모르고 있던 청정부는 북경주재 프랑스 대리공사 벨로네의 7월 13일자 조회를 통해 프랑스 측의 군사보복 계획을 갑작스럽게 통보 받았다. 이에 청정부는 곧바로 7월 16일자 회답조회를 통해 프랑스 측에 진상 조사 및 화해를 권고하면서도 조선문제에 대한 불간섭정책을 고집함으로써 프랑스 측의 조선침략계획을 적극 제지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정부는 自國 연해지역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두 차례의 자문을 통해 조선정부에게 나름대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통보해주었는데, 그 중 병인양요직전에 도착한 첫 번째 자문은 대원군 정권의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다.

여하튼 프랑스 측은 청정부의 對朝鮮 불간섭정책에 관한 거듭된 성명을 빌미로 한중 두 나라의 전통적 조공관계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면서 청정부의 화해권고를 그대로 묵살하고 나아가서 저들의 조선침략행동에 대한 청정부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청정부의 불간섭정책은 프랑스 측이 거리낌없이 병인양요를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 원인으로 되었다.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단계에 걸쳐 두 달 남짓이 전개된 병인양요 기간에 청정부는 병인양요 사태의 자세한 상황을 거의 파악하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프랑스의 조선침략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10월부터 시작된 병인양요의 제 2 단계에서는 대원군 정권의 천주교박해와 관련된 청나라의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프랑스 공사관과 외교적 논쟁을 벌이다가 병인양요의 종결을 맞이하고 말았다. 이처럼 청정부는 병인양요기간에 프랑스의 침략행동을 제지하거나 조선왕조의 항전을 지원해주는 그 어떤 실질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袖手傍觀의 불간섭정책으로 一貫하였다.

한편 병인양요 기간에도 한중 두 나라 사이에는 전통적 조공관계의 의한 사신왕래 및 자문의 왕래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마침 병인양요 기간에 서울로 도착한 청정부의 조선왕비책봉칙사 일행이 대원군 정권 측과 병인양요의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를 가졌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병인양요를 전후하여 한중 두 나라가 서로 주고받은 무려 13 건의 咨文에서도 프랑스 함대의 조선침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내용이 전혀 없었던 반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및 전통적 조공관계의 권위와 관련된 사안 등 내용으로 가득하였는데, 바로 한중 두 나라의 전통적 조공관계가 이미 병인양요와 같은 "서양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전통적 조공관계 체제의 유지 및 자국의 안보이익 차원에서 조선에 대한 서양열강세력의 진출을 반대하면서도 프랑스 측의 군사실력에 직접 대항할 수 없으므로 조선에서 일어난 병인양요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개입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 바로 당시 중국 청정부의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不干涉政策이었고, 그러한 불간섭정책은 결과적으로 포함정책의 강력한 수단으로 근대적 국제질서의 원칙을 주장하는 프랑스 측이 사상 최초로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조공관계를 공식 부정하고 거침없이 병인양요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 원인을 제공해주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병인양요는 오로지 조선왕조와 프랑스 두 나라의 충돌뿐만이 아니라 또한 천주교를 매개로 하는 서구문명 및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열강이 주장하는 근대적 국제관계질서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유교문명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조공관계질서 사이의 일대 충돌사태로서 한중 두 나라의 비극적 근대사 및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조공관계의 몰락을 예고해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